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검역공무원 근무장 중 넥타이는 근무상 필요에 따라 착용하게 하는 등 복제규칙을 개선하고, 정부조직법 개정('20. 8.11.공포, '20.9.12.시행)에 따른 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에 따라 검역공무원 표장을 질병관리청으로 수정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무모와 점퍼”를 “근무모, 점퍼, 넥타이”로 한다.

제12조 중 “검역소장은 검사실 검사 밧”을 “검역소장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남자의 표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장	재질 금속제 또는 컴퓨터 자수로 한다.	
	제식 가. 크기는 가로 45mm, 세로 65mm로 한다. 나. 중앙에 태극 모양(윗부분은 붉은색, 아랫부분은 파란색)을 표시하고 위에 “검역”, 아래에 “QUARANTINE”을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며 바탕색은 진노랑으로 한다. 다. 윗부분에는 무궁화잎, 중앙 왼쪽과 오른쪽에는 비행기를 상징하는 날개, 아랫부분에는 닻을 각각 은색으로 표시하고 날개 중앙에 “질병관리청”을 파란색 글씨로 표시한다. 라. 정복 상의의 왼쪽 윗주머니 위에 금속제로 된 표장을 달고, 근무복 상의 및 점퍼의 왼쪽 윗주머니 위에 컴퓨터 자수를 놓는다.	

	마. 정모, 근무모 및 안전모에는 표장을 만들어서 정면에 부착한다.	
--	--	--

별표 3 제1호 점퍼의 하복의 사용연한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넥타이의 사용연한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u>근무모와 점퍼</u> 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6조(근무장) ① ----- -----. <u>근무모, 점퍼, 넥타이</u>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u>검역소장은 검사실 검사 및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 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u>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u>검역소장은</u> ----- ----- ----- ----- -----.